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8. 3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일괄 개정안은 2021.8.20. 윤인숙, 박종호, 정순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8.20.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임(의안번호 : 2646호).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조문에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개정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문 중 “심신장애” 또는 “심신의 장애”, “심신쇠약”이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일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8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

1) 개정안 : 별 첨

2) 조례안 예고 : 2021. 8. 21. ~ 2021. 8. 25.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 “심신장애” 또는 “심신의 장애”, “심신쇠약”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연상시키는 용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검토 내용 및 종합의견

-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는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보고 드림.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자치법규의 정비)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